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8. 6. 18(월) 10:30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 검토보고

1.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2.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3.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노 광 빈

목 차

1.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1
2.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2
3.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	3
4. 검토의견-----	4
<붙임> :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6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검토보고

□ 연구 개요

- 연구모임명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 대표자 : 유병국 의원
- 연구목적 : 국제적 흐름이 통상 및 문화 예술 교류 저조 예상되어 해법 모색
- 구성원/등록일 : 13명(의원 5, 전문가 8) / 2017년 2월 7일
- 연구회 운영지원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충남의 국제교류
- 사업기간 : 2017년 2월 ~ 2018년 5월(16개월) / 8,000천원
- 사업내용
 - 충청남도 국제교류 역사와 현황 및 발전방향
 - 연구보고서 발간·배포 등

□ 활동 결과

- 연구방법 : 1~4차 회의 및 현장방문
- 내용요약 : 국제교류 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민의 국제화의식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득증대 방안 마련
- 정산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8,000,000원	3,988,200원	4,011,800원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검토보고

□ 연구 개요

- 연구모임명 :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 대표자 : 김문규 의원
- 연구목적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시책 및 실태를 분석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제고 정책 및 개선책 마련
- 구성원/등록일 : 16명(의원 8, 전문가 8) / 2018년 1월 23일
- 연구회 운영지원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마련
- 사업기간/사업비 : 2018년 1월 ~ 2018. 5월(5개월) / 3,000천원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복지 실태 분석을 통한 삶의 질 개선방안
 - 복지 실태 현황 및 쟁점도출, 개선방안 논의 등

□ 활동 결과

- 연구방법 : 회의 및 정책토론회
- 내용요약 : 여성농업인의 현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제시
- 사업비 집행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3,000,000원	2,996,080원	3,920원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결과 검토 보고

□ 연구 개요

- 연구모임명 :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연구모임
- 대표자 : 이 공 휘 의원
- 연구목적 : 충청남도 안전과 교통 분야의 공공 빅데이터와
모바일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 충남형 분석지표 개발
- 구성원/등록일 : 9명(의원 6, 전문가 3) / 2018년 1월 23일
- 연구회 운영지원 : 행정자치위원회

□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개발
- 사업기간/사업비 : 2017년 1월 ~ 2018년 5월(5개월) / 3,000천원
- 사업내용
 -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개발
 - 공공빅데이터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빅데이터분석과 활용방안 모색 등

□ 활동 결과

- 연구방법 : 1차 회의 및 워크숍
- 내용요약 : 빅데이터 활용 분석후 4개지역의 버스정류장 우선 설치지역 후보지 선정
- 사업비 집행결과

지 원 액	집 행 액	잔 액
3,000,000원	2,759,920원	240,080원

【 검토 의견 】

-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3항에 의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 3건의 연구모임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 당초 사업계획대로 연구과제 및 연구목적에 맞게 운영하였으며, 연구활동비의 경우, 지원범위 내에서 연구활동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각 연구모임의 운영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은

- 통상 및 문화 예술 등 지자체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 지난해 2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 충남 국제교류 활성화 진단 및 시·군의 국제교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 도와 시·군 간 국제 교류 역량 격차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협력과 공공외교의 전략화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 정책대안으로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 특히, 대산항 중국노선 개통, 해미공항 민항 유치 등 대외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 시기에 도의회가 충남도의 국제교류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 다만, 의원연구모임활동비 800만원중 399만원 집행하고 401만원 잔액발생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②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의 경우

- 농촌사회를 이끌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현실에서 의회 차원의 연구모임 운영을 통한 여성농업인 복지 활성화 계기를 마련함.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시책 및 실태를 분석하여 복지 정책 패러다임 분석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현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 특히,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여성농업인들의 현실 체감형 복지사업 발굴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정책의 확산 방안을 모색 한점은 커다란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③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연구모임」의 경우

- 최근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안전과 교통 분야의 공공 빅데이터와 모바일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 '충남형 분석지표를 개발'하여 천안시 교통사각 지대 4곳을 분석함.
- 주거인구 및 유동 인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환읍·신부동·원성동·구성동 등 4곳의 버스정류장 우선 설치 후보지역을 선정하는 과학행정 및 정책수립의 근거를 제공하였음.
- 이번 각 연구모임의 활동을 통하여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였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0-11-10 훈령 제 29호
(전부개정) 2009-04-30 의회훈령 제 37호
(일부개정) 2009-07-28 의회훈령 제 38호
(일부개정) 2009-11-05 의회훈령 제 39호
(일부개정) 2011-01-18 의회훈령 제 42호 충청남도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11-03-16 의회훈령 제 43호
(일부개정) 2013-04-10 의회훈령 제 44호
(일부개정) 2014-06-20 의회훈령 제 47호
(일부개정) 2016-09-12 의회훈령 제 5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의회위원이 지방자치발전과 충청남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업무중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위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등이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모임을 말한다.<개정 2011.03.16>

제3조(구성) ① 연구모임은 의원 5명 이상과 교수 등 전문가를 합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개정 2011.03.16, 2013.4.10.>

1.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전문가
2. 충청남도지사가 설립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3.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과 관련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연구모임의 대표는 의원이 하고, 의원이 아닌회원 중 1인을 간사로 하되 간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 제12조제1항의 연구활동중간보고서 및 제12조제2항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개정 2016.9.12>

③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 기간내에 2개 연구모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1.03.16>

④ 연구모임 명칭은 연구모임 앞에 연구분야 또는 과제명을 붙여 사용하며, 주제는 대표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⑤ 연구모임은 등록취소가 되지 않는 한 당해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활동한다.

제4조(연구모임의 등록)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의회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 보고서에 등록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의장은 연구모임의 등록을 할 수 없음을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1.03.16>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모임등록서를 해당 연구모임에 통지하며, 제3항에 의해 대표의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구모임등록서를 변경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2>

③ 의회에 등록된 연구모임(이하 "등록연구모임"이라 한다) 대표는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 또는 대표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모임 의원변동신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6. 9. 12>

④ 연구모임 등록사무는 입법정책담당관이 보좌한다.<개정 2011.01.18>

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모임을 등록할 수 없다.<신설 2014.6.20 >

- 1.연구주제·목적이 달성이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연구주제·목적이 극히 일부지역에 한정되거나 도정발전에 배치되는 경우
- 3.제3조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이 미비한 경우

4.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삭제 2011.3.16>

제6조(심의위원회) ①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회에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 9. 12>

④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신설 2014.6.20>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모임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등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의 배분·회수·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결과 및 연구활동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모임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연구모임 등록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07.28>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연구모임에 대하여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연구모임이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원연구모임등록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연차 연구모임일 경우에는 다음연도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9. 12>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연구모임당 연간 500만원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되, 활동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연구의 성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배정된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2>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연구모임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하며, 경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수송비, 급식비 등과 그 밖의 경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감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과 그 밖의 경비

⑤ 연구활동비는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계획 및 전년도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⑥ 삭제 <2009.07.28>

제9조(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제8조제3항의 지원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해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모임은 승인된 연구과제 이외의 활동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1.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위반한 때
2. 연구활동중간보고서와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3.4.10.>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모임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4.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연구활동계획서의 내용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연구모임은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하되, 전문가에 대한 자문경비는 연구활동비를 활용해야 한다.

⑤ 연구활동비의 지출기준은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충청남도 일반회계를 따른다.

⑥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기간 동안 자료정리와 의정활동비 관리 및 지출 등을 위하여 연구모임 등록 당시의 대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09.07.28, 2011.03.16>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등) ①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중에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 및 중요한 사항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 및 중요한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기간) ①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기간은 의장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의원연구모임등록서를 통지한 날부터 시작되며, 당해 연도 사업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11.05, 2014.6.20>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07.28>

제12조(연구활동결과보고서 등)<조 제목 개정 2013.4.10.>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중간보고서를 매년 7월31일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선거에 의하여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9. 12>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활동비정산서를 각 15부씩 작성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07.28, 개정 2013.4.1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정산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3.4.10.>

제13조(연구모임 등록의 취소) ① 의장은 등록연구모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과제 및 연구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과제 외의 연구활동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2011.03.16>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구활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의회훈령 제3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훈령 제38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심의 등록된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의회훈령 제39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심의 등록된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충청남도의회 규정 제42호, 2011.01.1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112호 시행일부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① 충청남도의회자료실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의회자료실운영규정”을 “충청남도의회 자료실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중 “법제자료담당관”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법제자료담당관”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한다.

부칙<충청남도의회 훈령 제43호, 2011.03.1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등록된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충청남도의회 훈령 제44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등록된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충청남도의회 훈령 제47호, 2014.6.2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충청남도의회 훈령 제50호, 2016. 9.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